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0

발의연월일: 2020. 6. 16

발 의 자: 박용진 · 이소영 · 박 정

송옥주 · 박재호 · 이학영

천준호 · 용혜인 · 기동민

전용기 • 민병덕 • 정춘숙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의 등장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통화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 어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통화를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통화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통화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되,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함(안 제2조제23호 신설).
- 나. 가상통화취급업을 가상통화매매업, 가상통화거래업, 가상통화중개업, 가상통화발행업, 가상통화관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각각의 업을 정의함(안 제2조제24호 신설).
- 다.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요건 및 인가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 신설).
- 라. 가상통화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통화거래업자로 하여금 가 상통화예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46조의5 및 제46조의6 신설).
- 마.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거래방식의 제한, 가상통화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함(안 제46조의7부터 제46조의10까지 신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 "가상통화"란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한다.
- 24. "가상통화취급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業)을 말한다.
 - 가. 가상통화매매업: 가상통화를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행위(가상 통화의 판매를 대행하거나 구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매매"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것. 다만,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가상통화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가상통화거래업: 가상통화의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고 운 영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 다. 가상통화중개업: 가상통화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 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라. 가상통화발행업: 가상통화를 발행하거나 고안하여 가상통화의 생성체계 또는 거래체계를 만드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마. 가상통화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가상통화를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제39조제1항 중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가상통화취급업자(제46조의3에 따른 가상통화취급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회사 또는전자금융업자"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가상통화취급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각각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가상통화취급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각각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가상통화취급업자"로 한다.

제6장 및 제7장을 각각 제7장 및 제8장으로 하고, 제6장(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가상통화취급업

제46조의3(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① 가상통화취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발행하거나 고안 하여 생성체계 또는 거래체계가 만들어진 가상통화를 국내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2. 가상통화를 구입하거나 가상통화취급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가 상통화취급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가상통화를 중개·교환·매매 등 을 하는 자(이하 "가상통화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 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가상통화취급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의4(인가의 신청 등) ① 제46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46조의3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인가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46조의5(가상통화예치금의 별도예치) ① 가상통화거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가상통화거래업자"라 한다)는 가상통화예치금(가상통화이용자로부터 가상통화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 ② 가상통화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상통화예치금이 가상통화이용자의 재산이 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한 가상통화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한 가상통화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가상통화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가상통화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가상통화예치금을 인출하여 가상통화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상통화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과 가상통화예치금의

지급시기·지급장소, 그 밖에 가상통화예치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⑤ 예치기관은 그 예치기관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가상통화거래업자에게 예치받은 가상통화예치금을 우 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가상통화거래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가상통화예치금의 범위, 예치의 비율, 예치기관의 가상통화예치금 관리, 그 밖에 가상통화예치금의 예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치의 비율은 가상통화거래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가받은 가상통화거래업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6조의6(가상통화이용자 피해보상계약) ① 가상통화거래업자는 제46 조의5에 따른 예치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상통화이용자 피해보상계약(이하 "피해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피해보상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 가상통화이용자의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 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 증계약
- ② 가상통화거래업자는 제1항의 피해보상계약에 따른 지급보증액이 제46조의5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추가로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가상통화거래업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피해보상계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의7(시세조종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가상통화의 매매·중개·교환·발행·관리(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매매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 치로 타인이 그 가상통화를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

치로 타인이 그 가상통화를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 3. 그 가상통화의 매매등을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등을 하는 행위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가상통화의 매매등을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그 가상통화의 매매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가상통화를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 다)를 변동시키는 매매등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 2. 그 가상통화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 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 3. 그 가상통화의 매매등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제46조의8(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가상통화의 매매·중개·교환·발행·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가상통화취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등의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46조의9(거래방식의 제한) 가상통화취급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의10(설명의무) ① 가상통화취급업자는 가상통화이용자(가상통화를 이용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대로 가상통화의 매매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가상통화는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과 가상통화의 내용, 매매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상통화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한다.
 - ② 가상통화취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가상통화이용 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가상통화취급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가상통화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가상통화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제3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46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매매등의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7297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를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로 한다.

- 5. 제46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통화의 매매등에 관하여 그 매매 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 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6. 제46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통화의 매매등을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을 영위한 자
- 2.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 통화취급업의 인가를 받은 자

- 3. 제46조의5 또는 제46조의6에 따른 예치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상통화거래업을 영위한 자
- 4. 제46조의8을 위반하여 자금세탁행위 등을 목적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개·교환·발행·관리한 자
- 5. 제46조의9를 위반하여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개한 자
- 6. 제4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통화의 매매를 권유하면서 가상 통화의 매매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3. "가상통화"란 교환의 매개</u>
	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
	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
	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화폐·전
	<u> 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u>
	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
	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한다.
<u><신 설></u>	24. "가상통화취급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업(業)을 말한다.
	가. 가상통화매매업: 가상통
	화를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행위(가상통화의 판매를
	대행하거나 구입을 권유하
	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u>"매매"라 한다)를 영업으</u>
	로 하는 것. 다만,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그 대가

 로 가상통화를 받는 경우

 는 제외한다

- 나. 가상통화거래업: 가상통화 기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 다. 가상통화중개업: 가상통 화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 라. 가상통화발행업: 가상통 화를 발행하거나 고안하여 가상통화의 생성체계 또는 거래체계를 만드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 마. 가상통화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가상통화를 보관· 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제39조(감독 및 검사) ① 금융감 저 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위원 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및

세39조(감독	및 검시	-) ① -	
		금융호	<u>]사, 전</u>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 수여부를 감독한다.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할 수 있다.
- ③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 무와 그와 관련된 재무상태를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 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 여 업무와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을 요구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
 ⑥

 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자

자금융업자 및 가상통화취급업
자(제46조의3에 따른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u>에서 같다)</u>
②
업자 및 가상통화취급업자
③
전자금융업자 및 가상통화취급
<u>업자</u>
금융회사, 전자금
응업자 및 가상통화취급업자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u>금융회사, 전</u>
자금융업자 및 가상통화취급업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 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 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 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 다.

- 1. (생략)
- 2. <u>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u> 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 4. (생 략) <신 설> <신 설>

		<u></u>	융회사	<u>, 전</u>
자금융업자	및	가상	통화취	급업
<u> 자</u>				

- 1. (현행과 같음)
- 2. <u>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u> <u>가상통화취급업자</u>-----

3. • 4. (현행과 같음)

제6장 가상통화취급업
제46조의3(가상통화취급업의 인
가) ① 가상통화취급업을 하고
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발
행하거나 고안하여 생성체계
또는 거래체계가 만들어진 가
상통화를 국내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상통화취급 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 기자본을 갖출 것
- 2. 가상통화를 구입하거나 가상 통화취급업을 영위하는 자(이 하 "가상통화취급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가상통화를 중개·교환·매매 등을 하는 자(이하 "가상통화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가상통화취급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u>것</u>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 출 것
-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로 정한다.

<u>제46조의4(인가의 신청 등) ① 제</u> <u>46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고자</u>

<신 설>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46조의3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 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 재사항·첨부서류 등 인가신청 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5(가상통화예치금의 별 도예치) ① 가상통화거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가상통화거 래업자"라 한다)는 가상통화예 치금(가상통화이용자로부터 가

<신 설>

상통화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 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 ② 가상통화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상통화예치금이 가상통화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 치기관에 예치한 가상통화예치 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 한다)하지 못하며, 가상통화예 치금을 예치한 가상통화거래업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가상통화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 다.
- ① 가상통화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한 가상통화예치금을 인출하여

가상통화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상통화거래업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과 가상통화예치금의 지급 시기·지급장소, 그 밖에 가상통 화예치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 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 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⑤ 예치기관은 그 예치기관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게 된 경우에는 가상통화 거래업자에게 예치받은 가상통화화예치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가상통화거래 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가상통화예치금의 범위, 예치의 비율, 예치기관의 가상

통화예치금 관리, 그 밖에 가상 통화예치금의 예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치의 비율은 가상통 화거래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가받은 가상통화거 래업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6조의6(가상통화이용자 피해 보상계약) ① 가상통화거래업 자는 제46조의5에 따른 예치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상통화이용 자 피해보상계약(이하 "피해보 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피해보상 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 약
- 2. 가상통화이용자의 피해보상 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 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 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② 가상통화거래업자는 제1항의 피해보상계약에 따른 지급

보증액이 제46조의5에 따라 예 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족액 에 대하여 추가로 피해보상계 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가상통화거래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한다.
- ④ 그 밖에 피해보상계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7(시세조종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가상통화의 매매· 중개·교환·발행·관리(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매매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통 화를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 위
-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통화를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 3. 그 가상통화의 매매등을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등을 하는 행위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가상통화의 매매 등을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그 가상통화의 매매등이 성 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가상통 화를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시 장에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등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 2. 그 가상통화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 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 는 행위
- 3. 그 가상통화의 매매등을 함 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 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 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제46조의8(자금세탁행위 등의 금
지) ① 누구든지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
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
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
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
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가상통화의 매매·중
개·교환·발행·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상통화취급업자는 대통령

<신 설>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 등의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 하여야 한다.

제46조의9(거래방식의 제한) 가상 통화취급업자는 「방문판매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 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 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 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10(설명의무) ① 가상통화금업자는 가상통화이용자 (가상통화를 이용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대로 가상통화의 매매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가상통화는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과가상통화의 내용, 매매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상통화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가상통화취급업자는 제1항 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가상통 화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

<u>제6장</u> 보칙 <u>제7장</u> 벌칙

제51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 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명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야 한다.

③ 가상통화취급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가상통화이용자의 합리적인 판 단 또는 해당 가상통화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u>제7장</u> 보칙 제8장 벌칙

제5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3)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 (생 략) <신 설>

④ (생략)

법률 제17297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49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 1. ~ 12. (현행과 같음)
- 13. 제46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매매등의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297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46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통화의 매매등에 관하여 그 매매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 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
- 6. 제46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통화의 매매등을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②·③ (생 략) <신 설>

한 자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를 받 지 아니하고 가상통화취급업 을 영위한 자
- 2.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를 받은 자
- 3. 제46조의5 또는 제46조의6에 따른 예치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상통화거래업을 영위한 자
- 4. 제46조의8을 위반하여 자금 세탁행위 등을 목적으로 가상 통화를 매매·중개·교환·발행· 관리한 자
- 5. 제46조의9를 위반하여 방문 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 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④ ~ ⑦ (생 략)

8 <u>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u> 징 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 다.

매매·중개한 자

- 6. 제4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통화의 매매를 권유하면
 서 가상통화의 매매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 <u>⑤</u> ~ <u>⑧</u> (현행 제4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